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나이 표기 방식 통일 및 나이·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규정 신설〉

■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0300호)

2024.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나이 표기 방식 통일	2
2.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규정 신설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성범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6. 11.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여 나이 기준 해석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는 한편, 유해환경·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한 소상공인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9조의2).

Ⅲ. 검토의견

1. 나이 표기 방식 통일

개정안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 방식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u>만 19세</u>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u>만 19세</u> 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8. (생략)	제2조(정의) ----- -----. 1. ----- <u>19세</u> ----- ----- <u>19세</u> ----- ----- -----. 2.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알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¹⁾이 개정(2022. 12. 27. 개정,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행정에 관한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만 나이’ 표기 방식을 ‘나이’ 표기 방식으로 수정하여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1)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2. 나이 및 본인 여부를 위한 협조 규정 신설

개정안은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9조의2(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이 법에 따라 나이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현행법 제16조 및 제28조²⁾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려는 자에게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

2) 「청소년 보호법」 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 그 밖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³⁾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는 자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게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뿐, 요청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요청에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이에 개정안은 나이 확인 등을 위하여 증표 제시를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을 취급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58조 및 제59조⁴⁾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

3)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를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한 자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등이 청소년에게 해당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도 증표 제시를 요청받은 사람이 그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므로 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면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 개정안에 따른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제재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증표 제시 요구의 미이행에 따른 추가적인 제재가 없더라도 소상공인 등에게는 해당 법 조항이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고 또한 별도의 제재 조치 없이 이용자의 신분 확인 협조의무를 규정한 유사 입법례⁵⁾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청소년 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 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25조(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② 사행행위영업소에 입장하는 사람은 영업자가 청소년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 확인을 위한 사항을 물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645